

## 학교기업 설치·운영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대통령령 제18327호 「학교기업 설치·운영에 관한 규정」 및 학칙 제72조 「학교기업설치·운영」에서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학교기업의 설립·운영)** ① 본교에 설치하는 학교기업의 명칭, 사업종목 및 연계학과는 는 예원에 솔대학교 학칙 [별표 제3호] 학교기업 현황과 같다.<개정 2015. 2. 1>

② 학교기업은 한 개의 학과·전공 또는 2개 이상의 학과, 전공 또는 교육과정과 내용상 연계한다.

**제3조(업무주관)** 학교기업설립 및 운영에 관한 주관부서는 산학협력단으로 하고,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- ① 학교기업의 설립·폐지에 관한사항
- ② 학교기업의 운영에 관한 지원관리
- ③ 학교기업의 평가 및 관리
- ④ 기타학교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반 관리

**제4조(학교기업의 설립절차)** ① 학교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당교직원, 학교기업의 소재지, 설립취지, 사업목표, 조직도, 위원회 구성현황, 영업목표, 활성화 계획, 참여학부(전공) 활용계획, 시설·기자재·설비운용계획, 재정투자계획 등이 포함된 학교기업사업계획서[별지 제1호 서식]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학교기업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기업 설립·운영계획에 대하여 인터넷, 학보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구성원으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한다.

⑤ 설립이 확정된 학교기업에 대하여 학칙에 반영하여야 한다.

**제5조(학교기업 및 사업종목, 관련 학부·학과 등)** 본교의 학교기업과 사업종목, 관련 학부·학과 및 교육과정은 [별표1]과 같다.

**제6조(학교기업의 소재지)** ① 학교기업은 학과(전공)또는 교육과정과 연계 운영할 수 있도록 본교 내에 둔다.

② 학교기업별 소재지는 제5조와 같다.

**제7조(학교기업 운영)** ① 총장은 학교기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한다.

② 총장은 학교기업의 운영을 위하여 학교기업 대표를 임명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③ 학교기업 대표는 학교와 학교기업과의 산학연계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, 총장이 학교기업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지원조직)** 학교기업의행·재정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.<신설 2015. 2. 1>

**제9조(교직원)** ① 학교기업별로 그 책임자를 둘 수 있다.

② 학교기업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원, 조교, 연구원을 둘 수 있다.

③ 총장은 대학의 교직원 또는 학교기업에서 임용하는 직원(조교, 연구원 포함)으로 하여금 학교기업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<신설 2015. 2. 1>

**제10조(운영위원회)** ① 학교기업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에 대한 심의 기구로 학교기업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총장은 당연직위원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학교기업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.

③ 운영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- ④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에 선임된다.
- ⑤ 운영위원장은 매분기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고, 수시 회의는 총장의 요구나 기타 필요시 개최한다.
- ⑥ 운영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⑦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다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- ⑧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<신설 2015. 2. 1>

**제11조(운영위원회 심의기능)** 학교기업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개정 2015. 2. 1>

- 1. 학교기업 운영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
- 2. 학교기업 현장실습 및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
- 3. 학교기업의 회계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
- 4. 기타 학교기업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

**제12조(학교기업 설치·운영비 한도)** ① 총장은 학교기업의 설치·운영을 위하여 본교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입총액의 10% 범위 내에서 학교기업 설치·운영비로 사용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학교운영 수입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출연금, 산업체 등 학교외의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에게서 학교비로 전입되는 모든 금액을 포함한다. 다만, 외부에서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한 기부금은 연간 학교회계운영 수입 총액 대상에서 제외 한다.

**제13조(현장실습인정 등)** ① 학교기업은 학과 또는 CO-OP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과 연구에 우선적으로 활용한다.

② 총장은 학교기업의 시설·설비, 직원수, 직원의 인적구성, 후생복지 등이 학생의 현장실습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제5조에 의한 현장실습 산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현장실습표준협약서[별지 제1호 서식]에 따라 현장실습을 받기 7일 전까지 총장 과 사전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 한다.

**제14조(현장실습학점의 인정)** ① 학생이 학교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·단위 또는 교육과정의 4분의 1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이를 당해 학교의 학점·단위 또는 교육과정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실습학기 및 시기, 주당실습기간에 따른 학점·단위 이수정도 등은 학칙에 따른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CO-OP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CO-OP 실습학기 및 시기, 주당 실습기간에 따른 학점·단위 이수정도 등은 [별표2]와 같다.

**제15조(학교기업의 회계처리)** ① 총장은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복식부기의 원리의 따라 학교기업의 회계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기업의 회계를 처리함에 있어서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·운영계산서 및 자금계산서로 한다.

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·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른다.

**제16조(회계연도)** 학교기업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.<신설 2015.2.1>

**제17조(학교기업의 예산)** ① 학교기업 대표는 본교의 회계연도에 따라 관련된 예산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학교기업의 예산을 편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집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기업의 예산편성·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른다.

**제18조(보상금지급)** ① 총장은 학교기업에서 순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그 수익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의 용도로 우선 지급한다.

② 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순수익 재원의 성격, 순수익 금액의 규모, 관련 교직원 및 학생의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지급액을 정하되,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학교기업별 [별표3]과 같다.

**제19조(자료보관·관리)** 학교기업을 관리·운영하는 학교기업 대표는 학교기업의 경영을 투명하게 하고, 관련 자료를 3년이상 보관·관리하여야 한다.

**제20조(감사)** 총장은 학교기업의 사업 및 회계감사를 위해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, 감사는 매년 1회 정기검사와 필요시 수시감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21조(폐업)** 총장은 학교기업이 운영상의 문제가 있거나 본교에 심각한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학교기업을 폐업 할 수 있다.

**제22조(재산의 귀속)** 폐지되는 학교기업의 재산을 본교에 귀속한다.

**제23조(기타사항)** ① 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교기업설치·운영에 관한 규정,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과 학칙의 관련규정을 준용하거나 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② 본 규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 총장의 결정에 따른다.

부 칙(2009. 2. 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 학교기업과사업종목, 관련학부·학과(전공)]

**학교기업과 사업종목, 관련 학부·학과(전공)**

연번	기업명	사업종목	관련학부(과)	사업종목 (표준산업분류코드)	소재지

<학칙 2013. 12. 4개정>

**학교기업과교육과정**

연번	기업명	교육과정명	비고

<학칙 2013. 12. 4개정>

[별표 2 CO-OP 실습학기 및 시기, 주당 실습시간에 따른 학점·단위 이수]

**CO-OP 실습학기 및 시기, 주당 실습시간에 따른 학점·단위 이수**

유형	교과목명	학점	시간	실습주	비고
시간제	학과 혹은 전공별 CO-OP 현장실습 교과목 편성	2	2/주	15	학교학기를 이수하면서 신청한 학점에 해당하는 시간을 학교기업 혹은 외부기업에서 시간제 근무
계절제	CO-OP 현장실습 I - I (1학년 하계방학) CO-OP 현장실습 I - II (1학년 하계방학) CO-OP 현장실습 II - I (2학년 하계방학) CO-OP 현장실습 II - II (2학년 하계방학)	각각 4학점	전일제	7	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외부기업 혹은 학교기업에서 7주 동안 전일제 근무
학기제	계열, 학과 혹은 전공별 개설 교과목	12학점 이하	전일제	20	학기 중 외부기업 혹은 학교기업에서 20주 동안 전일제 근무
학년제	계열, 학과 혹은 전공별 개설 교과목	24학점 이하	전일제	40	학기제를 2회 연속 실시

[별표 3 학교기업별보상금지급기준]

**학교기업별 보상금 지급 기준**

구분		비율	비고
보상금 (순익의 50%)	장학지원	60%	CO-OP교육생(트레이너), 기업기여도
	관리책임자	40%	교직원 보상금
재투자 (순익의 50%)	개발투자	50%	신규아이템개발 고품격 제품업그레이드
	시설투자	25%	신기술력 축적지원 시설장비 업그레이드
	마케팅홍보	20%	새로운 부가가치 창출
	창업지원	5%	졸업생의 창업지원

2009년 3월 6일 ※ 비율은 각 분야 순익의 50%를 100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비율임

[별지 제1호 서식 학교기업사업계획서]

**학교기업 사업계획서**

기 업 명				
대 표 자		소 속		
담 당 자		소 속		
개 업 일 자		등록번호		
업 태		종 목		
주 소	본 점			
	사업장			
연 락 처		팩 스		
참 여 전 공				
임 원 수		감사 명, 이사 명	직 원 수	
출 자 금		내부: 천원		총액  천원
		외부:		
주 요 설 비		공 동 :		
		독 립 :		
비 고				

- 붙임 1. 참여인원 이력서 : 대표자, 임원, 직원 등  
 2. 학교기업 운영규정(지침) 또는 사규(정관) 1부.  
 3. 1년 후 예상 손익계산서·대차대조표 각 1부.

예원예술대학교 총장 귀하

I. 설립취지

II. 사업목표

III. 조직도



[별지 제2호 서식 현장실습표준협약서]

### 현장실습표준협약서

**제1조(목적)** 이 현장실습협약서는 예원예술대학교 학교기업 대표 및 총장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)과 예원예술대학교 \_\_\_\_\_ 학생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) 상호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현장실습 기간 및 장소)** ① 현장실습기간은 \_\_\_\_\_년 \_\_\_\_\_월 \_\_\_\_\_일부터 \_\_\_\_\_년 \_\_\_\_\_월 \_\_\_\_\_일로 한다.

② 현장실습은 “갑”의 산업현장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한다.

**제3조(현장실습방법)** ① 현장실습은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의거 “갑”이 “을”과 협의하여 작성한 현장실습계획에 따라 실시한다.

② “갑”은 “을”이 1월에 1일 이상 “을”이 소속된 학과(전공)에 출석하여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.

③ “갑”은 “을”과 협력하여 현장실습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실습담당자와 교원이 참여하는 현장실습운영협의회를 구성 한다.

**제4조(사업주의 의무)** “갑”은 현장실습이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.

1. “을”의 전공과 희망을 고려하여 현장실습부서에 배치하고, “을”이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순환실습기회를 제공한다.
2. 현장실습에 필요한 시설, 공구, 재료 등을 준비한다.
3. 현장실습을 지도할 능력을 갖춘 담당자를 배치하여, “을”의 현장실습을 성실하게 지도한다.

**제5조(현장실습생의 권리)** ① “을”은 현장실습 시 산업현장의 적응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

② “을”은 현장실습기간 중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산업재해 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

③ “을”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.

**제6조(여자와 미성년자의 보호)** ① “을”이 여자이거나 18세미만인 경우 “갑”은 “을”을 근로기준법시행령 제 37조 [별표2]에 정하는 유해·위험한 실습에 종사시키지 못한다.

② “을”이 18세미만인 경우 현장실습기간은 1일에 7시간,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. 다만 “갑”이 “을”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1일에 1시간,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.

③ “을”이 여자이거나 18세미만인 경우 “갑”은 “을”의 동의가 없는 한 야간(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 사이) 및 휴일에 현장실습을 시키지 못한다.

**제7조(현장실습 수당, 식비 및 용품 등)** ① 현장실습수당은 실습학생의 장학금으로 다음과 같이 매월 \_\_\_\_\_일에 지급하기로 하되, 연장 현장실습시간(제 7조 제 1항 및 제 8조 제 2항의 현장실습시간을 넘은 시간)과 야간현장실습 또는 휴일현장실습에 대해서는 시간당 \_\_\_\_\_원의 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. 단, “갑”은 “을”이 현장실습을 중단 포기하거나 무단결근하는 경우에는 그 실습일수에 비례하여 현장실습 수당을 지급한다.

\_\_\_\_\_년 \_\_\_\_\_월 \_\_\_\_\_일 ~ \_\_\_\_\_년 \_\_\_\_\_월 \_\_\_\_\_일 매월(일) \_\_\_\_\_원

② 중식의 제공여부는 “갑”이 정하는 취업규정을 준용한다.

③ “갑”은 현장실습 기간 중 “을”에게 현장실습교재, 작업복, 실습재료, 개인용 공구, 안전보호구, 기타 현장실습에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.

**제8조(복리후생)** “갑”은 “을”에게 식당, 휴게실, 의무실, 기숙사, 통근버스 등의 복리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.

